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6. 9. 4.(금)

달 성 군 의 회

- 목 차 -

1.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6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59호

○ 제 출 일: 2026년 8월 21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우리 군 금고인 NH농협은행과 IM뱅크의 협력사업비와 (재)달성청운장학재단해산에 따른 무상귀속된 잔여재산을 (재)달성교육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 총괄

- 현금 : 1,610,090,917원(군금고협력사업비&해산 공익법인 잔여재산)

○ 세부내역

가. 2026년 군 금고 협력사업비(현금) : 525,000,000원

- 농협은행 : 500,000,000원
- IM뱅크(대구은행) : 25,000,000원

나. (재)달성청운장학재단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 현금 : 1,085,090,917원

※ 비상장주식 5,000주 :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5조 3항에 따라 달성교육재단으로의 무상증여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군민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단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및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달성군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 현재 (재)달성교육재단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약 504억 6천만 원의 기본재산과 37억 1천만 원의 보통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달성군의 교육정책 발굴 및 각종 교육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2026년도 군 금고 협력사업비 5억 2,500만 원과 (재)달성청운장학재단 해산에 따라 달성군에 귀속된 잔여재산 현금 10억 8,509만여 원 등 총 16억 1,009만여 원을 달성교육재단에 추가 출연하고, 비상장주식 5,000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단에 무상증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출연금은 (재)달성교육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안정적인 재단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군 금고 협력사업비와 (재)달성청운장학재단의 잔여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및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 제2860호

○ 제 출 일 : 2026년 8월 21일

○ 제 출 자 :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달성군 통합방위업무 관련 기관과 소관 부서의 변경된 명칭 및 업무 내용을 수정하고 2026년 화랑훈련 후속조치 과제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구성 개정(안 제3조 제3항)

- 달성군 통합방위 업무와 연관성이 다소 낮은 KT&G달성지점장, 농어촌공사달성지부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달성고령지사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였으며, KT의 조직개편으로 직위가 폐지된 KT달성지사장도 당연직에서 제외하고 국가정보원 소속 위원의 직위 변경 요청 반영

○ 분야별 간사 개정(안 제5조)

- 작전담당간사를 직제 변동에 유연하게 달성군 관할 군부대 작전장교로 수정

- 총무·민방위담당간사를 ‘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담당간사와 민방위담당간사로 나누고 각 업무의 소관 부서장으로 변경
- ’24년 1월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방위협의회 간사에 소방담당간사로 ‘달성소방서’ 추가

○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개정(안 제7조)

- 실무위원회 의장을 부군수로 지정
-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를 분기별 1회로 수정

○ 회의 개정(안 제8조)

- 2026년 화랑훈련 후속조치 과제에 따라 회의방식에 화상회의와 전자투표 방식을 추가함.

4.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제2조, 제8조,「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실제 통합방위 업무 수행 체계에 맞도록 협의회 위원 구성을 현행화하고, 운영방식 등을 정비하여 달성군 통합방위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안 제3조 제3항의 협의회 위원 구성은 통합방위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국가정보원 소속 위원의 직위를 변경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안 제5조의 분야별 간사는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을 반영하여 업무 중심으로 개정하고,「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담당간사를 추가하였음.

○ 안 제7조, 제8조의 실무위원회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화상회의 및 전자투표 방식을 신설하였음.

○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 제2861호

○ 제 출 일 : 2026년 8월 21일

○ 제 출 자 :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과거 포상을 수상한 민간인의 달성군수 포상 수상사실 확인 요청이 최근 증가함에 따라, 포상사실 확인서의 교부 근거와 서식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포상 사실 확인서 교부 근거 조항을 신설(안 제13조의2)

○ 포상사실확인서 별지 6호 서식 신설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거 포상을 받은 사람이 포상 증서 또는 패를 분실한 경우에도 포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안 제13조2**를 신설하여 군수가 포상대장을 확인하여 포상사실확인서(별지 6호 서식)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 제2862호

○ 제 출 일 : 2026년 8월 21일

○ 제 출 자 :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제한 규정에 대하여 다른 장학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제2항)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기준에 맞도록 정비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5. 검토의견

○ 장학금 지급대상을 「한국장학재단의 해당 연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에 따른 장학금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여 장학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장학금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 제2863호

○ 제 출 일 : 2026년 8월 21일

○ 제 출 자 :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구지면의 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구지읍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함.

○ 다사읍 박곡리의 행정반 지번 변경을 통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에 오류 기재된 지번을 바르게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지읍 설치(안 제2조 제4항)

- 현행 “구지면” 표기를 “구지읍”으로 변경

-〔별표 1〕, 〔별표 2〕,〔별표 3〕의 구지읍 전부를 현풍읍과 가창면 사이로 재배치

○ 다사읍 박곡리 1, 2, 3반 지번 및 경계 변경(안〔별표 3〕)

○ 구지면 화산2리 관할구역 내 일부 오류 기재된 지번 수정(안〔별표 3〕)

○ 관련 조례 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용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운영 조례」 제2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7월 20일 구지면의 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구지읍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다사읍 박곡리 행정반 지번 변경과 조례에 잘못 기재된 구지면 화산2리 일부 관할 지번을 수정하는 것은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안 제2조 제4항에 구지읍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 1〕,〔별표 2〕,〔별표 3〕의 구지읍 전부를 현풍읍과 가창면 사이로 재배치 하고,

- 다사읍 박곡리 1, 2, 3반의 행정반 지번 및 경계를 재조정하고,
- 조례에 잘못 기재된 구지면 화산2리 일부 관할 지번을 수정하고,
- 부칙 제3조에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구지면의 읍 승격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및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다사읍 박곡리 행정반의 지번 및 경계를 주민 거주 현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 제2864호

○ 제 출 일 : 2026년 8월 21일

○ 제 출 자 :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신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사항 정비

-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을 장기근속 퇴직예정자에서 우수·모범 공무원, 퇴직예정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6조 제6호)

-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을 기념패 지급으로 변경(안 제6조 제7호)

○ 건강증진 지원사업 범위 확대(안 제6조 제9호)

-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추가

○ 소속 공무원 생일 선물 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0호)

○ 임신・출산 장려 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 제11호)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 안 제6조 제6호, 제7호의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국내외 연수 지원 대상을 우수・모범공무원 및 퇴직예정자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또한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을 기념패로 변경함으로써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과 재정낭비 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 안 제6조 제9호, 제10호, 제11호의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 및 심리상담 추가와, 생일 선물 지원 및 임신・출산 장려 지원 규정 신설은 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근무의욕 고취 등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퇴직(예정)자 공무원에 국내외 연수의 일률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부적절한 지원 관행 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출산 친화 정책 등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